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,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허가·무자격 옥외광고업자를 근절하고

○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2020.12.22. 일부개정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 표시 근거 마련(안 제2조·제8조)

－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, 의료시설 등이 외벽에 건물 명칭 또는 동을 표시하는 경우 세부 기준 마련

-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(안 제23조)
 - 심의기간 15일에서 20일로 변경
 -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신청 가능
-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(안 제33조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,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허가·무자격 옥외광고업자를 근절하고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2020.12.22. 일부개정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방안이 강화되고 그 밖에 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 표시근거 마련, 옥외광고심의 심의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것과 재심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